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2024. 11.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 1

1. 세입예산안 1

가. 개 요 1

2. 세출예산안 3

가. 총 괄 3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4

II.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7

1. 인건비(총액)(1011-250) 7

가. 개 요 7

나. 중요직무급 예산 합리적 배분기준 마련 필요 7

2. 기관운영 기본경비(1011-250) 11

가. 개 요 11

나. 전문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예산 삭감 검토 필요 11

다. 집행실적을 반영한 유류비 감액 필요 16

라. 기본경비로 편성된 인권도서관 운영 예산 주요사업비로 이관 필요 19

3. 인권의식 증진(1031-300)	23
가. 개 요	23
나. 인권의 날 행사 걱정 소요 예산 반영 필요	24
4.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	28
가. 개 요	28
나. 인권교육원 설립 사업 일정 관리 철저 필요	29
5.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1034-301)	33
가. 개 요	33
나.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외부전문가 의뢰 근거 마련 필요	34
6.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1037-500)	39
가. 개 요	39
나.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걱정 예산 확보 필요	40
7. 인권정책권고 이행계획 통지기한 준수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42

I.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안

가. 개 요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700만원으로, 2024년도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 (B-A)	%
세입	27	27	-	-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기타경상이전수입」은 호봉정정 등에 따른 과년도 급여 정산금 환수금액 및 소송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및 송달료 정산분 등으로 2024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과태료」는 2024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의 거부·기피·방해 및 자료제출요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유¹⁾가 발생할 것을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감안하여 편성한 것임.

그 밖에 「기타재산이자수입」과 「기타잡수입」도 2024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세입예산안 규모 및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 (B-A)	%	비 고
기타재산이자수입	1	1	전년동		민간단체 경상보조비 이자정산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 발생
과 태 료	5	5	전년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과태료) 조사방해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20	20	전년동		「국고금 관리법」 제29조 (지출금의 반납) 등
기 타 잡 수 입	1	1	전년동		공적항공마일리지 구매대금 등
합계	27	27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
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 ②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2. 세출예산안

가. 총괄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424억 3,000만원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413억 300만원 대비 11억 2,700만원 (2.7%)이 증액됨.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① 2025년 하반기에 준공되는 국가인권교육원의 개원준비를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일부 집기류 구입비용 7억 4,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② 2025년 인권체험관 운영 종료에 따라 체험관 시설 공간의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비용 1억 2,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③ ‘화상채팅상담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에 따라 2억 3,000만원이, APF 의장 임기 만료 등에 따라 1억 9,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정신장애인 인권토크 캠페인’ 사업(1억 2,100만원)이 폐지되었음.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 (B-A)	%
세출	41,303	42,430	1,127	2.7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2024년도 예산 대비 10억 6,400만원(5.1%) 증액된 218억 6,400만원, 기본경비는 2024년도 예산 대비 4억 5,200만원(4.7%) 증액된 101억 4,700만원, 주요사업비는 2024년도 예산 대비 3억 8,900만원(△3.6%) 감액된 104억 1,900만원이 각각 편성됨.

[2025년도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 예산 (A)	구성비 (%)	2025 예산안 (B)	구성비 (%)	증 감 (B-A)	%
인 건 비	20,800	50.3	21,864	51.5	1,064	5.1
기 본 경 비	9,695	23.5	10,147	23.9	452	4.7
주요사업비	10,808	26.2	10,419	24.6	△389	△3.6
합계	41,303	100.0	42,430	100.0	1,127	2.7

202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비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증액된 세부사업을 보면,

첫째, 「지역인권문화 확산」 사업은 2025년 종료되는 인권체험관 공간의 원상복구 사업 신규 편성 등의 사유로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둘째,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사업은 2025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국가인권교육원의 개원준비를 위한 사업 신규 편성 등의 사유로 7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셋째, 「북한인권 개선」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사업 신규 편성 등의 사유로 4,400만원이 증액되었음.

다음으로 감액된 세부사업을 보면,

첫째, 「인권의식 증진」 사업은 인권콘텐츠 제작비용 축소로 1억원이 감액되었고,

둘째,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업은 화상채팅상담시스템 구축 완료 등으로 2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셋째,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은 실태조사 축소 등으로 1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음.

넷째,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은 정신장애인 인권토크 캠페인 사업 폐지 등으로 1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다섯째,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은 실태조사 축소로 1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섯째,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APF 의장 임기 만료 등에 따라 2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음.

일곱째,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은 인권자료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1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밖에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사업 2,600만원, 「군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 200만원, 「국내교류협력」 사업 700만원, 「e-진정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 8,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2025년도 주요사업비 예산안 증감 내역]

(백만원)

사업명 (단위사업/세부사업)	2024년도 (A)	2025년도 (B)	증 감 (B-A)	%
총 계	10,808	10,419	△389	△3.6
□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945	914	△31	△3.3
○ 인권의식 증진	780	680	△100	△12.8
○ 지역인권문화 확산	165	234	69	41.8
□ 인권교육 활성화	1,945	2,667	722	37.1
○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945	2,667	722	37.1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3,054	2,487	△567	△18.6
○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423	160	△263	△62.2
○ 취약분야 인권개선	1,284	1,151	△133	△10.4
○ 장애인 인권증진	578	435	△143	△24.7
○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257	231	△26	△10.1
○ 군인권보호 및 증진	512	510	△2	△0.4
□ 인권제도 선진화	1,460	1,390	△70	△4.8
○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319	1,205	△114	△8.6
○ 북한인권 개선	141	185	44	31.2
□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1,667	1,450	△217	△13.0
○ 국제교류협력	1,450	1,240	△210	△14.5
○ 국내교류협력	217	210	△7	△3.2
□ 인권위 정보화	1,737	1,511	△226	△13.0
○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044	902	△142	△13.6
○ e-진정시스템 구축운영	693	609	△84	△12.1

Ⅱ.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

1. 인건비(총액)(1011-250)

가. 개 요

인건비(총액)는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공무원에게 봉급(연봉) 및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10억 6,400만원(5.1%) 증액된 218억 6,400만원임.

[2025년도 인건비(총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인건비(총액)	19,872	20,800	21,864	1,064	5.1

나. 중요직무급 예산 합리적 배분기준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요직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 및 성과 보상 강화를 위하여,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중요직무급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47명(4급 4명, 5급 16명, 6급 27명)²⁾에게 중요직무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7,100만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직제상 총 정원의 21% 범위 내에서 총 지급인원을 결정할 수 있음. 국가위원회위원회는 총 정원(2024. 9. 30.) 248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중요직무급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³⁾		예산액
국가인권위원회 (본부)	4명(4급)	200천 원×4명×12개월=9,600	54,600 (36명)
	11명(5급)	150천 원×11명×12개월=19,800	
	21명(6급)	100천 원×21명×12개월=25,200	
인권사무소	5명(5급)	150천 원×5명×12개월=9,000	16,200 (11명)
	6명(6급)	100천 원×6명×12개월=7,200	
계	47명	-	70,8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해당 기관의 직무, 인건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직무급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중요직무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중요직무를 정기적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명의 21%에 해당하는 52명 범위 내에서 격무, 기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군인권보호국, 인권 사무소, 예결산 담당 등)를 중심으로 47명을 설정하였다고 설명함.

[국가인권위원회 부서별 정원]

구 분	위원장실 총장실	기획 조정관	직속 부서	정책 교육국	침해 조사국	차별 시정국	군인권 보호국	인권 사무소	계
정원	19	23	21	54	36	30	22	43	248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3) 중요직무급 직급별 월지급액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 직급별 월지급 상한액을 적용함.

[직급별 월지급 상한액]

지급대상	월 지급 상한액
3급(상당) 또는 4급(상당) 공무원(과장급)	200,000원
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	150,000원
6급(상당)이하 공무원	100,000원

중요직무 선정기준은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직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고, 중요직무급이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요직무급의 부적정한 운영 사례]

- 중요직무급을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실·국·과별 또는 개인별로 순차지급하는 행위
(1분기 A과, 2분기 B과, 3분기 C과, 4분기 D과)
- 중요직무급을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성과상여금과 연계하여 성과등급이 낮은 실·국·과 또는 개인에게 보상차원으로 지급하는 행위
-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중요직무급을 수령하는 행위 등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요직무급을 4급·5급·6급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대통령경호처는 7급·8급·9급에게도, 대통령비서실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7급·8급에게도, 공정거래위원회는 7급에게도 중요직무급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⁴⁾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도 중요직무급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중요직무는 격무, 기피, 대외 주요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선

4) 국가인권위원회는 각목명세서상 중요직무급 예산내역의 ‘6급’은 ‘6급 이하’를 의미하므로 하위 직급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은 각목명세서상 중요직무급 예산내역에 6급 이하도 각 계급별로 지급 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 대통령경호처: 6급 25명, 7급 24명, 8급 22명, 9급 21명
- 대통령비서실: 3급 12명, 4급 40명, 5급 18명, 6급 10명, 7급 12명, 8급 5명
- 공정거래위원회: 3급 5명, 4급 29명, 5급 54명, 6급 23명, 7급 5명, 8급 1명
- 법제처: 3급 9명, 4급 21명, 5급 9명, 6급 2명, 7급 1명

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도에 처음으로 운영될 예정인 중요 직무급이 나눠먹기식으로 부적정하게 운영되지 않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직무의 중요도 · 난이도 · 협업의 정도, 직급별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 합리적으로 중요직무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2. 기관운영 기본경비(1011-250)

가. 개 요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반수용비, 여비 등을 편성한 예산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3억 9,400만원(5.3%) 증액된 78억 1,000만원임.

[2025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기관운영 기본경비	6,768	7,416	7,810	394	5.3

나. 전문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예산 삭감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⁵⁾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2조⁶⁾는 12개의 전문위원회를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분야별로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전문위원회 현황]

구 분	전문위원회
상임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지역인권전문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정보인권전문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전문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아동인권전문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전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에 전문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명목으로 12개 전문위원회별로 1회, 각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 회의실⁷⁾ 부족

6)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2조(구성) 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상임위원회 : 사회권전문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회, 지역인권전문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회, 정보인권전문위원회
2. 침해구제제1위원회 :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3. 침해구제제2위원회 :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4. 차별시정위원회 : 차별시정전문위원회
5.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6. 아동권리위원회 : 아동인권전문위원회
7. 군인권보호위원회 : 군인권전문위원회

7)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 현황

- 사용목적: 전원위원회(월 2회), 상임위원회(월 4회), 소위원회(6개, 월 1~2회), 전문위원회(연 1~2회), 주간회의, 월간회의, 업무평가, 제안심사, 승진심사, 면접심사, 연구용역심사, 보고회 등 각종 회의 진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외부 회의장소를 임차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할 목적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전문위원회 임차료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내역	예산액
임차료 (210-07)	전문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100만원×12위원회	12,0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그러나, 전문위원회 회의장 임차료 예산 신규 편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정하다고 보임.

첫째, 국회운영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2023년 1월 신설된 정보인권전문위원회가 회의장소를 임차하여 개최된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정보인권전문위원회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회의운영 및 소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음.⁸⁾

○면적 및 수용인원

실명	사용면적(평)	사용면적(m ²)	수용인원
전원회의실	47.11	155.46	회의석: 13 / 간사석: 4 / 보고석: 6 / 배석: 6
중회의실	21.59	71.24	회의석: 11 / 간사석: 2 / 보고석: 3 / 배석: 4
소회의실	15.21	50.19	회의석: 1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8) 2023회계연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지적사항	○ 정보인권전문위원회는 2023. 1. 16.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개정을 통해 신설된 위원회로서 2023년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3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1회는 장소를 임	제도개선

정보인권전문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전문위원회의 회의장 임차료 예산을 명시적으로 편성한 것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명백히 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 할 수 있음.⁹⁾

둘째,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전문위원회가 연간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전문위원회별 1회의 임차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상 해당 전문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실이 아닌 외부장소에서 개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내부 회의실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것임.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차하여 개최하였으며, 참석사례비 등 소요 경비(1,719만원)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1034-301) 사업에 이미 편성된 정보인권포럼 관련 예산에서 집행하였음. ○ 위원회 운영 측면에서, 일반적인 다른 전문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점, 전문위원회는 대규모 공간이 필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의장소를 임차하여 개최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 예산 집행 측면에서 회의장소 임차로 인하여 임차료(286만원)가 추가로 지출되었음.	
시정요구 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전문위원회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회의운영 및 소요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9)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가능한 내부 회의실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함.

[최근 3년간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구 분(위원회수)	4회	3회	2회	1회	미개최
2022(11개)	-	3개	3개	5개	-
2023(12개)	2개	1개	2개	6개	1개
2024. 9.(12개)	-	-	1개	5개	6개(개최 예정)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위원회를 정례화하는 등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거나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일정을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시간 등을 조정·배분하는 등 전문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회 임차료 예산은 합리적 범위로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집행실적을 반영한 유류비 감액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전용차량 4대, 전용차량을 제외한 공용차량인 업무차량 13대, 총 17대의 공용차량을 운용·관리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현황]

연 번	구 분	차 종	소유형태	등록일
1	전용(위원장)	G80(전기차)	임차	2022. 6. 1.
2	전용(상임위원)	G80(전기차)	〃	2022. 9. 13.
3	전용(상임위원)	G80(전기차)	〃	2022. 9. 13.
4	전용(상임위원)	G80(전기차)	〃	2022. 9. 13.
5	업무용	K5(Hyb)	〃	2022. 2. 4.
6	업무용	아이오닉5	〃	2023. 5. 27.
7	업무용	K5(Hyb)	〃	2022. 2. 4.
8	업무용	스포티지(Hyb)	〃	2024. 3. 5.
9	업무용	스포티지(Hyb)	〃	2024. 3. 5.
10	업무용	아이오닉6	〃	2024. 9. 3.
11	업무용	카니발(Hyb) 9인승	〃	2024. 9. 13.
12	업무용(부산사무소)	아이오닉5	〃	2024. 9. 20.
13	업무용(광주사무소)	아이오닉5	〃	2024. 9. 30.
14	업무용(대구사무소)	투싼(Hyb)	〃	2021. 12. 1.
15	업무용(대전사무소)	투싼(Hyb)	〃	2021. 12. 1.
16	업무용(강원사무소)	투싼(Hyb)	〃	2021. 12. 1.
17	업무용(제주사무소)	아이오닉5(AWD)	〃	2024. 9. 27.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국가인권위원회는 운용·관리 중인 공용차량의 유류비로 금년과 동일한 4,560만원을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음.

[유류비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내역	예산액
유류비 (210-08)	1. 본부 ○ 위원장 승용차 105,000원×1대×12월= ○ 상임위원 승용차 105,000원×3대×12월= ○ 업무용 승용차 260,000원×7대×12월= 2. 인권사무소 260,000원×1대×12월×6사무소=	45,6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그런데,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유류비 예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이월액 또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43.4%~76.2%, 예산현액 대비 28.0%~74.2%로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동 유류비는 전년도(2022년도)에 비하여 480만원을 증액하여 4,560만원을 편성한 2023년도에는 2,05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률이 45.1%에 불과함. 또한, 금년 9월까지의 집행률도 예산액 대비 43.4%, 예산현액 대비 28.0%로 저조한 실정임.

[최근 5년간 유류비 예산 집행실적]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A)	전년 이월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차기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예산액 (C/A)	예산현액 (B/A)
2020	46,800	23,791	70,591	28,402	20,000	22,189	60.7	40.2
2021	43,200	20,000	63,200	32,919	-	30,281	76.2	52.1
2022	40,800	-	40,800	30,261	-	10,539	74.2	74.2
2023	45,600	-	45,600	20,562	25,038	-	45.1	45.1
2024. 9.	45,600	25,038	70,638	19,800	-	-	43.4	28.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따라서, 유류비 예산의 불필요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2025년도 유류비 예산의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기본경비로 편성된 인권도서관 운영 예산 주요사업비로 이관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인권도서관을 두고 있음.¹⁰⁾

금년 예산의 경우 인권도서관 본관의 운영 예산은 「기관운영 기본경비」(1011-250) 사업에 편성되어 있고, 인권도서관 분관(광주·대전·강원)의 운영 예산은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 사업에 분산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인권도서관 분관(광주·대전·강원)의 운영이 2024년 1월 종료¹¹⁾됨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는 인권도서관 본관의 운영 예산만 「기관운영 기본경비」(1011-250) 사업에 편성되어 있음.

1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인권도서관) ① 위원회는 인권도서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도서관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제4조(도서관 주요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2.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서비스 제공
3. 전자도서관 구축·운영 등의 도서관 정보화
4.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5. 간행물 번호부여 및 관리
6.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운영 종료된 인권도서관 분관(광주·대전·강원)의 소장자료는 지역 인권단체 기증(도서, 영상자료 등), 인권도서관 본관, 인권교육원, 인권사무소(내부 이용이 가능한 자료) 이용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계획임.

[2025년도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세 목	예산액	내 역
일반수용비 (210-01)	63,679	○ 자료선정 등 전문가 자문료, 상호대차수수료 ○ WEB DB 정기 구독(국내·국외) ○ 신문 구독 ○ 인권도서관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인권도서관 자료회원 운영 ○ WEB접근성 품질마크 갱신심사 ○ 견학프로그램 운영 ○ 자료정리용품 및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880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연회비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0,000	○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국내여비 (220-01)	1,030	○ 인권도서관 국내 여비
자산취득비 (430-01)	121,437	○ 도서(동양서·서양서) 구입(e-book 포함) ○ 비도서 구입(영상자료 포함) ○ 연속간행물 구입(국내·국외)
계	207,026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도서관 운영 예산의 대부분은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 경비인 자료구입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예산이 주요사업비로 이관될 경우 인권도서관 장서¹²⁾ 구축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도서관 운영 예산을 기본경비에 편성하고 있다는 입장임.

12) 인권도서관 본관 소장자료 현황(2024. 9. 30. 기준)

○ 단행본: 55,407책, 비도서: 10,817점, WEB DB: 7종, 연속간행물: 인쇄 45종/전자 818종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 예산은 기본경비보다 주요사업비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첫째,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는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 예산은 열람용 도서 구입비, WEB DB 구독, 홍보비용, 견학프로그램 운영비 등인데, 해당 예산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권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기본경비로 편성할 수 있는 ‘기본행정경비’인 실·국·과 단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의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기본경비 적용대상
☐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 ① 기본행정경비 - 실·국·과 단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 -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직책수행경비, 과운영비, 급식비 등 기준성 경비 - 공무원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교육훈련 경비 - 맞춤형 복지 시행에 따른 경비

둘째, 기본경비는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비 성격의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 예산을 기본경비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인권도서관 이용자 수, 만족도 등 인권도서관 운영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셋째, 인권도서관 분관(광주·대전·강원)의 운영 종료로 인하여 금년에는 주요사업비인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에 편성되어 있던 인권도서관 분관 예산이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순감되는 등 인권도서관 관련 예산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 예산의 주요사업비 이관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인권도서관 본관 운영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본경비에 편성된 해당 예산을 주요사업비인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으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3. 인권의식 증진(1031-300)

가. 개 요

「인권의식 증진」사업은 인권잡지 제작·보급, 웹진 발간,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구제활동과 인권정책을 홍보하고, 인권작품 공모, 인권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여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1억원(△12.8%) 감액된 6억 8,000만원임.

[2025년도 인권의식 증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인권의식 증진	957	780	680	△100	△12.8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① 인권의식 향상 매체 발간 1억 2,000만원, ② 인권문화 확산 및 매체활용 홍보 4억 8,800만원, ③ 인권작품 공모 3,200만원, ④ 인권의 날 행사 4,000만원임.

나. 인권의 날 행사 적정 소요 예산 반영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민들의 인권 의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 인권상 수여, 인권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날 행사를 위하여 금년과 동일한 4,000만원을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음.

[2025년 인권의 날 행사 개최 계획안 및 예산안 편성내역]

구 분	내 용
일시	2025. 12. 10.(수) 10:00~11:20(80분)
장소	미정
행사내용	기념사, 축하, 세계인권선언 기념영상,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 기념공연 등
참석자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인권위원회, 다양한 시민단체 등 약 200명
예산안 편성내역 (4,000만원)	○ 임차료(210-07): 300만원 - 인권의 날 기념식장 ○ 일반용역비(210-14): 2,000만원 - 기획 및 연출료, 사회자 등 출연료, 기타 행사운영 경비, 행사장 및 무대 설치 ○ 사업추진비(240-01): 500만원 - 인권의 날 행사 참석자 오찬, 기념품 제작 ○ 포상금(310-03): 1,200만원 - 협조상, 공로상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최근 3년간 동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예산액 4,000만원에 1,950만원(예산액 대비 48.8%)을 자체전용·조정하여

5,95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예산액 4,000만원에 2,000만원 (예산액 대비 50.0%)을 자체전용하여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예산액 4,000만원에 2,000만원(예산액 대비 50.0%)을 세목변경하였음.¹³⁾ 즉, 매년 상당한 수준의 전용·세목변경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3년간 인권의 날 행사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이 · 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2022년	40,000	19,500	59,500	56,200
2023년	40,000	20,000	60,000	60,300
2024년	40,000	20,000	60,000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해당 자체전용·세목변경 등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사진전 및 동영상 제작, 기념행사 통·번역비 충당 등을 위하여 250만 원을 자체전용하고 1,700만원을 조정하였음. 2023년도에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 영상 제작 등을 위하여 2,000만원을 자체전용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콘텐츠 제작(기념 영상 제작, 온라인 중계 등)을 위하여 2,000만원을 세목변경하였음.

13) 2024년도는 12월 인권의 날 행사 개최 후 집행 예정임.

[최근 3년간 인권의 날 행사 관련 자체전용·세목변경 등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사 유
2022년 (자체전용)	2,500	코로나19로 인하여 3년만에 이루어지는 인권의 날 행사를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개최함에 따라 온라인(유튜브) 중계료, 수어통역비용 지급 등의 소요예산 증가에 따른 일반수용비의 부족
2022년 (조정)	17,000	‘인권의 날 행사’ 사진전 및 동영상 제작, 기념행사 통·번역비 충당 등을 위하여 ‘매체 등을 활용한 인권홍보’ 사업 일반수용비 활용
2023년 (자체전용)	20,000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 영상 제작, 기념식 행사 동영상본 제작 등 예산 부족
2024년 (세목변경)	20,000	세계인권선언 76주년 기념식 관련,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기념 영상 제작, 온라인 중계 등) 예산 부족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는 하나 인권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개최하기 위해서는 6,000만원 규모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에 따라 2025년도에도 행사 용역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자체전용·세목변경 등 예산의 사후적 변경이 예상된다.

「국가재정법」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의 이·전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불필요한 전용 등은 지양하고 국회가 의결한 세출예산의 목적과 용도를 준수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인권의 날 행사는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므로, 관련 예산의 최근 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전용 등 예산의 사후적 변경이 반복되지 않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권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4.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1032-301)

가. 개 요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사업은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 인권강사 양성, 사이버교육 운영,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7억 2,200만원(37.1%) 증액된 26억 6,700만원임.

[2025년도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2,091	1,945	2,667	722	37.1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① 인권교육 정책 제도 기반 구축 및 국내외 협력 1억 8,000만원, ②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4억 3,000만원, ③ 인권교육과정 운영 10억 6,900만원, ④ 사이버 인권교육 운영 1억 6,500만원, ⑤ 인권교육원 개원 준비 7억 4,400만원, ⑥ 직원 역량강화 교육 7,800만원임.

나. 인권교육원 설립 사업 일정 관리 철저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공공, 시민영역 전반에 걸쳐 인권교육을 확대·심화하기 위한 전문교육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통하여 ‘인권교육원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인권교육원 설립 사업 개요]

- 위 치: 경기 용인시 신갈로 114(신갈동 17-7)
- 규 모: 대지 4,610㎡, 연면적 4,637.16㎡, 지상 3층~지하 1층
- 세부시설: 각종 강의실, 연구실, 토의실, 강사실, (온-오프 융합교육)스튜디오, 영상체험실, 전시홀, 콘서트홀, 정보/홍보실, 사무실, 회의실 등
-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1년) 연장¹⁴⁾
* 2024년 3월 공사착공, 2025년 11월 준공 예정, 2026년 개원 예상
- 예산소요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집 행 액(2021~2023)				2024 예산 (현액)	2025 예산안
	2021	2022	2023	소계		
총 계	226	499	-	725	5,430	8,543
기본조사 설계비	226	-	-	226	-	-
실시설계비	-	499	-	499	-	-
공사비	-	-	-	-	4,195	7,381
감리비	-	-	-	-	1,214	1,142
시설부대비	-	-	-	-	21	2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14) 인권교육원 공사는 당초 2023년 3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5년 9월 준공하고 2026년에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조달청의 감리비 재산정 요청에 따른 감리비 관련 총사업비 증액 협의(2023년 8월 완료) 및 감리사업자 선정 계약 2차례 유찰(2023년 10월 및 12월) 등으로 인하여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2024년 3월에서야 공사에 착공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준공시기도 2025년 11월로 연기되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공사 중인 인권교육원의 준공(2025년 11월)에 맞추어 인권교육원 개원 준비 예산 7억 4,400만원을 신규로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주요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 용역비 1,700만원, 주요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비 5억 4,000만원, 사무집기류 및 정보통신류 자산취득비 2억 2,300만원임.

[2025년도 인권교육원 개원 준비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내역	합 계
일반용역비 (210-14)	주요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용역비: 17	17
공사비 (420-03)	주요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비: 504	504
자산취득비 (430-01)	사무집기류(회의실, 방재실, 당직실 등): 14 정보통신류(네트워크 연결장치, 보안서버시스템): 209	223
합 계		74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인권교육원 신축 사업은 2024년 9월 기준 구조물 해체 및 주출입구 진입로 공사를 진행 중으로, 이후 2025년 1월까지 구조물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2025년 9월까지 각종 설비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2025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6월까지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2025년 12월까지 완료하며, 2026년 3월까지 사무용집기 및 정보통신류 구매 및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임.

[2025년 인권교육원 설립 공사 및 개원 준비 공사 일정]

주요 내용	일 정	세부 내용
설계	2021. 12.	○ 기본설계
	2022. 12.	○ 실시설계
건축 공사	2024. 3.	○ 착공
	~ 2024. 9.	○ 구조물 해체 및 주출입구 진입로 공사
	~ 2025. 1.	○ 구조물 증축 공사
	~ 2025. 9.	○ 전기·통신·소방공사 ○ 우·오수 관로공사, 포장공사 ○ 내·외부 마감, 도장, 조경 공사
	~ 2025. 11.	○ 시운전 및 준공 준비 ○ 건축물 준공 : 2025. 11. 5.
추가 공사 등	~ 2025. 6.	○ 인테리어 기획 및 설계용역 계획 수립·발주 ○ 인테리어 설계 용역 완료
	~ 2025. 12.	○ 인테리어 공사용역 계획 수립 및 발주 ○ 인테리어 공사 시행 및 완료
	~ 2026. 2.	○ 전기·통신(네트워크) 설비 공사 ○ 방송 설비 공사 ○ 사무실 이전 관련 공사
	~ 2026. 3.	○ 각종 기자재 구매 및 설치 공사
개원	2026. 상반기	○ 인권교육원 개원식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24년 9월말 기준 인권교육원 설립 공사 공정률은 10.9%로 착공 당시 예정 공정률인 22.9%보다 저조함. 추후 공정률은 각 공사 단계별 복잡도와 작업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준공 시점까지 남은 기간이 13개월임을 감안하면 당초 계획대로 2025년 11월에 준공이 될지 다소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예정 공정률은 실제 공정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감리단과 시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전체 공사 일정을 관리해나가고 있으며, 현재 전체 공사 일정 및 준공 일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만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예정대로 2025년 11월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 현장 여건 변화나 동절기 등 계절적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인권교육원 설립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주요 공용부 인테리어 공사와 정보통신류 기기 구매 등이 지연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도에 편성된 인권교육원 개원 준비 예산이 연내에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원 설립 사업의 일정 및 공사 진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5.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1034-301)

가. 개 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사업은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도모하고 인권정책 개발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며 국가인권정책 추진의 기초자료인 국가인권통계를 생산·분석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1억 1,400만원(△8.6%) 감액된 12억 500만원임.

[2025년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481	1,319	1,205	△114	△8.6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①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4,900만원, ② 인권정책 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 4억 4,300만원, ③ 정보인권보호 제도 개선 4,300만원, ④ 기업인권 정책개발 5,900만원, ⑤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 6억 1,000만원임.

나.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외부전문가 의뢰 근거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4호15)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행 업무 중 하나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는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사업 방향 수립의 기초 자료를 축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행하는 각종 법령·제도 등 관련 권고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도 있음.¹⁶⁾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모두 연구용역을 통하여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에 3억 5,800만원 등 여러 세부사업에 걸쳐 총 17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1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16)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20, p.112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에서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법적 근거와 형식이 문제되는데, 조사 사무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의 근거 법령으로는 「정부조직법」(제6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장)을 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법적 근거로 보면 인권상황 실태조사 예산은 일반연구비(260-01)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2025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⁷⁾	사업명	과제명	예산	담당부서
일반 과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34-301)	인권상황 실태조사(57,625,000원*6.2건)	358	인권정책과
특정 과제 (12)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032-301)	지방의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60	인권교육 기획과
	취약분야 인권개선 (1033-301)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실태 및 이행감시체계 구축 연구	43	인권침해 조사과
		인권에 기반한 치매노인 지역사회 계속 거주 돌봄방안 연구	70	사회인권과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기준 수립위한 기초연구	80	아동청소년 인권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80	아동청소년 인권과
	장애인 인권증진 (1033-302)	장애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	56	장애차별 조사1과
		장애인 탈시설 이행점검 지표 개발 및 인권 상황 실태조사	57	장애차별 조사2과
	차별시정 및 혐오 대응 강화 (1033-303)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75	성차별 시정과
	군인권 보호 및 증진 (1033-304)	군 성고충 대응체계 운영현황 실태조사	80	군인권협력 지원과
		군인권교육 직무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연구	70	군인권협력 지원과
	북한인권 개선 (1034-303)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49	인권정책과
	국제교류협력 (1036-300)	지방정부의 유엔인권제도 참여방안 연구	50	국제인권과
소계(특정과제)			770	

구분 ⁷⁾	사업명	과제명	예산	담당부서
기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1034-301)	국가인권통계 분석 등 연구용역	100	인권정책과
		국가인권 통계 조사	500	
계	-	-	1,728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첫째, 실태조사 수행 주체와 관련하여,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를 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인 점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또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경우 전국 단위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표본추출을 통한 설문조사 및 조사결과 통계분석 등은 관련 전문 인력이 확보된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 및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

17) 일반과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과제 주제를 특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공모, 부서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현안으로 제기되는 각종 인권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임. 특정과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중장기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로서, 매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에 소요 과제를 제출하여 편성하는 예산임.

하는 방안으로 생각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충실하게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임.

그러나, 실태조사란 실제의 상태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실태조사 영역·분야·범위 및 대상 등에 따라 실태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자와 직접 면담을 수행하여야 하는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예를 들어, 2024년도에 수행하고 있는 실태조사¹⁸⁾ 중 ‘초급 부서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대학 강사의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 등과 2025년도에 수행할 예정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군 성고충 대응체계 운영현황 실태조사’ 등은 직접 방문 또는 면담이 필요한 실태조사로 보임.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 운영 상황 및 수행 중인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외부전문가의 실태조사 수행 근거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에 따르면 외부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위탁하여 수

18)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도에 25개 과제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수행 중임.

행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인데,¹⁹⁾ 해당 규정들은 민간위탁 시 적용되는 것으로 연구용역을 위탁할 근거로는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

현재 인권상황 실태조사 예산은 민간위탁사업비(320-02)가 아닌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되어 있고, 실제 연구용역 계약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²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행 업무로 실태조사와 평가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²¹⁾에서 해당 실태조사와 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외부전문가 의뢰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9)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민간위탁

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2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평가)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조사·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6.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1037-500)

가. 개 요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은 인권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정보시스템 보강 및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1억 4,200만원(△13.6%) 감액된 9억 200만원임.

[2025년도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 결산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1,016	1,044	902	△142	△13.6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① 인권정보시스템 운영 6억 900만원, ② 정보시스템 보강 및 개선 2억 9,300만원임.

나.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적정 예산 확보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매년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하여, 2022년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구축하였고 2023년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24년에는 인권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

[최근 3년간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세 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구축 시스템
2022	일반연구비 (260-01)	264	242	22	누리집(홈페이지)
2023	일반연구비 (260-01)	253	228	25	행정정보시스템
2024. 9.	일반연구비 (260-01)	247	229	-	인권자료관리시스템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이버인권교육원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억원) 및 ‘국회업무자료관리시스템 구축’(1억 4,000만원)을 2025년에 실시하기 위한 예산 3억 4,000만원을 내역사업인 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인권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예산 확보 필요 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세목)	필요 사유	예산액
사이버인권교육원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60-01)	○ 2026년 인권교육원 개원과 함께 다양한 인권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인권교육을 통한 사회 전반의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사이버 인권 교육원’ 구축 필요	200
국회업무자료관리 시스템 구축(430-01)	○ 2010년 도입된 국회업무처리 관리서버의 내용 연수(7년) 도과 및 서버 노후화로 인한 교체 부품이 없어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 필요	140
계	-	34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은 매년 편성·집행되어 온 것으로, 최근 3년간의 예산 편성 추이 및 집행 현황, ‘사이버인권교육원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억원) 및 ‘국회업무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7. 인권정책권고 이행계획 통지기한 준수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²²⁾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함.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9월)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통지 현황을 살펴보면, 90일 이내 이행계획 회신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2024년 9월 현재 회신율이 44.4%에 그치는 등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2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통지 현황]

(단위: 건, %)

구 분	피권고기관 (권고건수)	검토 중 (90일 이내)	회 신		미회신 (90일 초과)	90일 이내 회신율
			90일 이내	90일초과		
2020	366(25)	-	87	277	2	23.8
2021	95(26)	-	35	54	6	36.8
2022	176(33)	-	70	105	1	39.8
2023	97(33)	-	53	41	3	54.6
2024	44(20)	35	4	2	3	44.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결정문 통지 시 이행계획 통지 의무를 정확히 안내하고 이행계획 제출 기한 내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적극적으로 회신을 촉구하고 있으며, 보완적으로 결정문을 통지한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계획을 통지받지 못하면 유선으로 이행계획 제출 의무를 재확인하고 있으나,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이 필요한 권고의 경우 법령 제정·개정, 예산 확보 등 중장기 계획하에서 이행계획을 도출해야 하는 사안이 있고, 이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회신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권고사항의 이행계획 통지에 시간적 한계를 둔 것은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그 이행을 독려

하려는 취지이고, 2012년 이행계획 통지의무가 법률에 명시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회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행계획 통지기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법·제도 및 운영 등 다각적 측면에서 이행계획 회신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7